

2020. 4. 6.(월) 10:30
제21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
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김관기

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제안 및 제출자	김남충 의원 외 11명	제안연월일	2020. 4. 1.
소 관 위 원 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4. 1.

보 고 내 용

제안이유

- 「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」에서 위임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, 근로자 권리 보호 대상의 확대를 위하여 「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근로자의 정의(안 제2조)
 - 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따른 근로자의 정의를 일부 개정
 - 「근로기준법」제2조에 따른 근로자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「근로기준법」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

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